

제34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2023. 6. 19.(월)

경상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269
발의일자	2023.5.31.
회부일자	2023.6.2.



기 획 경 제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영두)

# 경상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강만수 의원 외 16명

2. 제안이유

- 경상북도 내 1만여 명이 넘는 자율방범대원들이 도내 치안유지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나, 그동안 법적인 근거가 미비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이 열악했음.
- 이에 2023년 4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경상북도 차원의 조례를 마련하여 도내 자율방범활동을 증진하고, 자율방범대원 등의 처우를 향상시켜 지역 사회 안전에 기여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가. 제명을 경상북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로 변경(제명)
- 나. 자율방범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자율방범연합회 등에 대한 경비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자율방범대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상북도경찰청 및 시·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4. 관련법령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 5. 입법예고 결과: 의견없음

## 6. 관련부서 협의

- 가. 규제심사: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나. 부패영향평가: 부패유발요인 없음
-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 7. 검토의견

### □ 조례 전부개정의 필요성

- 본 개정조례안은 2023. 4. 27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지원대상을 도 자율방범연합회에서 도내 자율방범연합대 및 시·군 자율방범대까지 확대하고,
- 복장·장비·차량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사무실 설치비·임차비·운영비 등으로 지원내용 확대 등을 통해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내 자율방범활동 증진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경상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로 개정하는 것을 포함해 현행 조례의 내용을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1조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내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도내 자율방범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음.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음.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용어를 정의함으로써 정책 추진에 혼선이 없도록 하여 적절한 것으로 보임.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란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율방범대장”이란 자율방범대원 중 자율방범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안 제3조는 도내 자율방범활동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담은 일반적 규정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4조는 경상북도 경상북도자율방범연합회, 도내 자율방범연합대 및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이는 현재 「경상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보다 지원대상을 도 자율방범연합회에서 도내 자율방범연합대 및 시·군 자율방범대까지 확대하고,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복장·장비 구입비, 차량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사무실 설치비·임차비·운영비 등으로 지원내용을 확대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비용추계(5년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계	12,113	12,113	12,113	12,113	12,113	60,565
피복(정복 상하의)	127	127	127	127	127	635
차량(임차비,보험)	5,071	5,071	5,071	5,071	5,071	25,355
사무실(임차비,집기)	6,915	6,915	6,915	6,915	6,915	34,575

※ 자율방범연합회(도비 100%), 자율방범연합대·방법대(국비 50%, 도비·시군비 50%)  
 지원대상 : 자율방범연합회 1개, 자율방범연합대 24개, 자율방범대 437개

- 안 제5조는 지역사회 범죄예방 등에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6조는 연합회 및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상북도경찰청, 시·군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종합 검토의견

-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야간 취약시간대에 순찰활동을 하면서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등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조직으로, 전국 4,225개 조직에 약 10만 44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북도의 경우 2023.3월 기준 도내 437개 조직에 10,361명의 자율방범대원이 활동 중에 있음.
- 지난 2015년 경북도에서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경상북도자율방범연합회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결의·다짐대회, 실무자워크숍 등 자율방범연합회 행사 지원

에 매년 5~6천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왔으나, 자율방법대는 그동안 법률적 근거 없이 운영되어 자율방법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부족하였음.

<참고> 2023년 자율방법연합회 지원 예산

내 용	예산액(천원)	예산목
합 계	50,000	
범죄예방및행복만들기결의대회	10,000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한마음다짐대회	30,000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자율방법대실무자워크숍	10,000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 이에 지난 2022. 4. 26일 「자율방법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지난 2023. 4. 27일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시행에 맞춰 현행 「경상북도 자율방법연합회 지원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 자율방법활동 지원 조례」로 개정하는 것을 포함해 현행 조례의 내용 전부개정을 통해, 자율방법대 활동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법활동을 활성화하고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취지, 조문의 내용 등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비용추계 결과 향후 연평균 120여억원씩 5년간 총 600여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집행에 있어서 신중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